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#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공기구비품(전기히터) 불용 처리

1. 관련 근거

가. 물품관리규정 제50조(불용결정기준) 제51조(불용결정의 절차)

나. 재무처-9685호(2013. 10. 15.) 『물품 불용처리 간소화 대상 확대 시행』

2. 우리 처에서 운영중이던 비유동자산 중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공기구비품[전기히터]에 대하여 불용 요청하고자 합니다.

가. 구 분 : 비유동자산(공기구비품)

나. 대 상 : 전기히터 1개

다. 세부내역 : 불임 참조

불임 불용물품 심사조서 1부. 끝.

대리 강형욱

처장 01/21  
안영권

협조자 부장 조공식

시행 총무지원처-514 (2016.01.21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145 전송 02-6311-2080 / 2060040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